



제391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능검사 품질검사 의무 조항 삭제 등〉

■ 송갑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612호)

2021.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의무 조항 삭제	3
2. 성능 및 품질 향상 지원 근거 신설	10
3. 한자어의 한글 변경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등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갑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1. 9. 16.
3. 회 부 일 : 2021. 9.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를 생산한 때에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관련 규정은 1980년대 한·불 생산협정 당시 국내 항공부품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서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항공기 부품의 경우 국제품질표준 기준 준수가 의무화되어있어 개별 국가의 품질검사가 불필요하며, 「항공안전법」에서 인증 및 감항승인 등 안전관련 검사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우주비행체 및 관련 부품의 경우에도 안전보다 성능중심으로 발전되어 별도 감항인증 체계가 없고,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 등을 활용하여 우주비행체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므로 현행법의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법치국가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대부분의 단어가 한자로 쓰여 있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문 규범에 맞고 일반 국민의 이해가 쉽도록 다듬음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을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 10조 · 제11조 · 제19조제1항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삭제)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기 · 우주비행체 · 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다. 한자어로 표기된 부분을 한글로 변경하고, 어문 규범에 맞고 이해가 쉽도록 개정함.

Ⅲ. 검토의견

1.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의무 조항 삭제(안 제10조, 제11조 등)

개정안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 등을 생산한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성능검사와 품질검사 의무를 삭제하여 「항공안전법」과의 중복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10條(性能檢査 및 品質檢査)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航空機・宇宙飛行體・機器類 또는 素材類의 生産을 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性能檢査 및 品質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검사업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삭 제>

2.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 또는 승인한 검사기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자가검사업체로 지정하여 자사생산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시설·방법·절차 및 면제의 범위와 기간, 전문검사기관과 자가검사업체의 지정 신청 절차, 검사합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第11條(사용의 제한등) ①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航空機・宇宙飛行體・機器類 또는 素材類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試驗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航空機・宇宙飛行體・機器類 또는 素材類를 試驗飛行등의 用途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공안전법」 제23조 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하여야 한다.

<삭 제>

항공기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①산업통상자원부는 「항공 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라 항공기, 우주비행체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형사고 예방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인증으로 ‘항공우주분야 성능검사 및 품질제도’를 ②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등과 항공기에 장착하는 장비품의 안전성 인증을 위해 ‘항공기 등 형식증명 및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음.

[표 2] 항공기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비교

구분	항공우주분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항공기 등 형식증명 및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전문검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증대상	항공기, 우주비행체, 항공기기, 소재류, 지상훈련기 등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항공기 용 장비품
인증기준	「항공기 표준부품 검사기준」 (77개 기준)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69개 기준)
사후관리	별도 규정 없음	「항공안전법」 제20조~제24조, 제 59조~제61조 등에 따른 항공안 전 관련 검사 실시 -인증기준 미달시 형식증명과 형식승인 취소 및 정지

자료: 「인증제도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2015.3.

그러나, 2015년 3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인증제도 운영실태」와 관련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두 인증제도는 ①인증대상이 항공기 및 장비품으로 유사하고, ②항공기 및 장비품이 승인된 기준에 따라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모두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③인증제도의 사후관리도 「항공안전법」¹⁾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실질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상호 중복되는 규제로 판단하여 양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조항은 1980년대 한·불 생산협정²⁾ 당시 항공부품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국내 산업기반이 발전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³⁾이라는 점과, ②감사원 감사결과와 같이 항공기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항공안전법」 상의 형식증명 및 감항승인⁴⁾ 등으로 검

1)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2016년 3월(2017.3.30. 시행) 「항공법」 개정을 통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각각 분법하였음.

2) 한·불 생산협정은 1990년 2월 체결(2003.10월 6차 개정)되어, 국내에서 생산하여 프랑스에 수출하는 품목의 품질검사와 생산업체의 품질 관리·감독을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국내 업체는 품질검사 비용과 시간 절약이 가능함.

3)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990년 품질검사 시행 이후 4개사 18건 활용되었으나 2021년 10월말 현재 2개사(현대위아, 대한항공) 4건만 유지 중임. 2개사의 경우에도 현대위아는 2022년 부품생산이 종료될 예정이며,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사의 자체 품질기준을 이미 적용 중이므로, 해당 조항이 의미가 없어진 상황임.

4) 「항공안전법」

제20조(형식증명 등)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

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과 같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항공기 부품의 경우 품질 관련하여 국제품질표준⁵⁾ 기준의 준수가 의무화 되어 있어 개별 국가의 품질검사는 불필요한 상황임.

참고로, 개정안에는 제10조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련 조문의 삭제 및 개정 사항 또한 반영하고 있음.

-
1.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증명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제한형식증명
가.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나목의 항공기를 제외한다)
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
- 제24조(감항승인)** ① 우리나라에서 제작, 운항 또는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감항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항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항승인을 하여야 한다.
- 제27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① 항공기등의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품(시험 또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설계·제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기술표준품”이라 한다)을 설계·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이하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제작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표준품은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5) 항공분야 국제품질표준(AS9100) : 항공우주 품질표준으로 개별 산업계가 동 표준 미획득시 국제적 산업활동에 참여 불가능하며, 국내 400여개사 기취득 완료함.

[표 3] 관련 규정 개정 사항

현행	개정안
第11條(사용의 제한등) ①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航空機・宇宙飛行體・機器類 또는 素材類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試驗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航空機・宇宙飛行體・機器類 또는 素材類를 試驗飛行등의 用途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하여야 한다. 第19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業務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行政機關・專門檢査機關 또는 일정한 資格이 있는 者에게 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안전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第20條(檢査手數料)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삭 제>

<u>의하여 性能檢査 및 品質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u> <u>第21條(罰則)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	<삭 제>
<u>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삭 제>

2. 성능 및 품질 향상 지원 근거 신설(안 제10조의2조)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하려는 것임.

[표 4]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2(성능 및 품질 향상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1. <u>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시험·평가기반 조성</u> 2. <u>국내외 품질 표준 및 인증제도의 개발·보급·확산</u> 3. <u>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u>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항공기 등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예산 사업 및 지원 등은 없으며, 항공기 부품 등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평가 기반조성, 품질 표준 및 인증제도의 개발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업체에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항공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 한자어의 한글 변경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등(안 제1조~제4조, 제12조~제16조, 제19조)

개정안은 한자어로 표기된 부분을 한글로 변경하고, 어문 규범에 맞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표 5]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第1條(目的) 이 法은 航空宇宙産業을 合理的으로 지원·육성하고 航空宇宙科學技術을 효율적으로 研究·開發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과 國民生活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航空宇宙産業”이라 함은 航空機·宇宙飛行體·關聯附屬機器類 또는 關聯素材類를 生産(製造·加工·組立·再生·改造 또는 修理하는	1.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 또는 수리하는 것을

것을 포함하되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의 整備・修理・改造등 航空機使用者가 그 運航上の 필요로 행하는 作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事業과 航空機・宇宙飛行體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航空機”라 함은 航空에 사용할 수 있는 飛行機・回轉翼航空機・滑空機・飛行船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航空에 사용할 수 있는 機器를 말한다.

3. “宇宙飛行體”라 함은 地球大氣圈 내외를 飛行할 수 있는 宇宙發射體・航空宇宙船・人工衛星・有人 또는 無人宇宙船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宇宙飛行에 사용할 수 있는 機器를 말한다.

4. “關聯附屬機器類(이하 “機器類”라 한다)”라 함은 航空機 또는 宇宙飛行體의 構成品을 말한다.

5. “關聯素材類(이하 “素材類”라 한다)”라 함은 航空機 또는 宇宙飛行體의 生産에 사용되는 材料를 말한다.

포함하되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정비・수리・개조 등의 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하는 사업자

2. “항공기”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회전익항공기・활공기・비행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3. “우주비행체”란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항공우주선・인공위성・유인 또는 무인우주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4. “관련부속기기류”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구성품을 말한다.

5. “관련소재류”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6. “航空宇宙科學技術”이라 함은 航空宇宙産業에 관련되는 科學技術, 地球大氣圈 내외의 飛行에 관련되는 科學技術 또는 航空機・宇宙飛行體를 이용하는 應用科學技術을 말한다.

第3條(航空宇宙産業開發基本計劃의 수립) ① 政府는 航空宇宙産業의 開發을 위하여 다음 각號의 사항이 포함된 航空宇宙産業開發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5.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基本計劃에 따라 매년 그 施行計劃을 수립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6. “항공우주과학기술”이란 항공우주産業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지구대기권 내외의 비행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또는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응용과학기술을 말한다.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5.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5.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국방 과학연구소법 제3조의 규정에 의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① -----

--각 호의-----
-----.

1. ~ 3. (현행과 같음)
4. 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5.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6.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7. -----
-----대통령령으로-----

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현행과 같음)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신 설>

<신 설>

<신 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 (생 략)

5.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기술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2條(資金의 지원) 政府는 항공우주 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7. (현행 제4호와 같음)

8. -----
-----대
통령령으로-----

③ -----제1항에 따른-----

--.

④ 제3항에 따른-----

-----.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 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 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

할 수 있다.

第13條(國有施設 및 機器등의 貸與등)

① 政府는 航空機・宇宙飛行體・機器類 또는 素材類의 研究・開發이나 生産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國有의 施設 또는 機器등을 航空宇宙産業事業者에게 有償 또는 無償으로 貸付・讓與 또는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付・讓與 또는 사용・收益의 조건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航空宇宙産業開發政策審議會의 設置) 政府의 基本計劃의 수립과 이에 따른 政府의 重要政策 및 各 部處간의 主要業務의 調整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産業通商자원부장관 소속으로 航空宇宙産業開發政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第15條(審議會의 機能) 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基本計劃의 수립
2. 基本計劃과 관련된 政府의 重要政策 및 各 部處간의 主要業務의 調整
3. 基本計劃을 施行하는데 필요한 歲出豫算의 수립
4. 航空宇宙科學技術의 研究・開發活動에 대한 總括・調整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第16條(審議會의 구성등) ① 審議會는

원할 수 있다.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여

등) ① 政府는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生産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 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치) 政府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政府의 重要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産業通商자원부장관 소속으로 航空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各 號의 사항을 심의한다.

1. 基本계획의 수립
2. 基本계획과 관련된 政府의 重要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3. 基本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 審議會의 委員長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되고, 委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審議會의 委員長은 民間・軍事部分간의 業務調整 및 協調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措置를 강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諮問委員會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審議會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業務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行政機關・專門檢査機關 또는 일정한 資格이 있는 者에게 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무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民間・군사부분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권

<u>회의 안전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u>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委託할 수 있다.</u>	<u>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u>
--	---

개정안은 국민이 법령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한자어를 한글로 변경하고,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안 제4조제2항, 제19조)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문 의 처
02)6788-5460